|  |  |  |
| --- | --- | --- |
| **문화부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 인쇄**  **발표에 대한 통지**  문시발[2012]4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방송통신국,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티베트자치구 문화시장 행정집법 본대(总队):  법에 의거하여 공연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연 브로커의 대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 경영활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부는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 이에 따라 관철 실행하기 바란다.  이에 통지한다.  문화부  2012년 12월 5일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공연경영 활동을 규범화 하고 공연 브로커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경영 활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이하 <조례>)및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공연경영 자격증서라 칭하는 것은 전문 공연브로커의 종업자격증명이며,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제3조** 본 방법이 공연브로커라 칭하는 것은 공연경영기구에서 공연 조직과 제작 및 영업, 공연의 거간과 대리 및 중개, 연기자 계약과 홍보 및 대리 등 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인원과 현급 문화주관부무에 비안된 개체(개인) 공연브로커를 포함한다.  **제4조** 공연경영기구 설립은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3명 이상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취득한 전문 공연브로커를 보유해야 한다.  개체 공연브로커는 현급 문화주관부문에 비안할 때,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5조** 공연브로커는 공연경영 활동 중 공평, 공정, 공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중국 공연업계협회의 공연브로커 자격 인증업무의 조직실시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해당 관할 내의 공연브로커의 경영활동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연경영 자격증서**  **제7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심사발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공연경영 자격증서 시험개요 제정한다. 시험내용은 공연시장 정책법규, 공연시장 기초지식, 공연경영 실무 및 종업규범, 예술기초이론을 포함해야 한다  (2) 매년 2회의 전국적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시험시간, 시험장소는 사전 2개월 전에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 30일 내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 발급해야 한다.  (3) 공연경영 자격증서는 일괄적으로 인쇄 제작해야 하며, 증서는 전국 통일 일련번호를매긴다.  **제8조** 무릇 만 18세 이상,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 인원 포함)을 보유한 경우, 시험을 통해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시, 기존 자격증서 발급단위에서 교체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제10조** 공연브로커의 종업단위가 변경된 경우, 공연브로커는 기존 자격증서 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임차할 수 없다.  **제3장 종업규범**  **제12조** 공연브로커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례>, <실시세칙>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연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공연경영 계약 중 해당 항목 업무를 책임지는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 번호를 명기할 것.  (3) 경영업무 기록를 보존한 것.  (4) 경영 공연항목의 진행내용에 대해 자가 심사하여, 공연내용이 건강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할 것.  (5) 규정에 따라 공연경영과 관련된 평생교육에 참가하여 업무자질과 직업도덕 수준을 제고할 것.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위 규칙.  **제13조** 공연브로커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연경영기구에서 종업하는 인원이 개인명의로 공출경영 활동에 종사  (2) 2개 이상(2개 포함) 공연 경영기구에서 종업  (3) 경영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경영업무에 대해 허위홍보  (4) <조례> 제26조의 금지내용을 포함한 공연에 경영서비스 제공  (5)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공연브로커는 경영활동 중 연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연기자의 종업행위를 규범화 해야 하며, 연기자가 업무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연기자가 직업도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문화주관부문은 공연경영기구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 교체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하고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문화주관부문이 영업성 공연활동을 심사비준 할 때, 해당 업무를 감당한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해야 한다.  **제17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브로커의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공연브로커의 직업도덕과 업계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업계 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연경영기구가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해당 경영업무를 감담한 공연브로커에 대해 통보 비판해야 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그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말소해야 하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8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전국 문화시장기술감독관리와 서비스플랫폼에 근거하여 공연브로커의 인적서류를 구축하고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취득, 변경, 회수말소 등 정보를 기록하여, 행정심사비준, 종합 법 집행, 공공(公众)조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경영업무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연브로커의 분류, 등급분류 관리세칙을 제정하고, 공연브로커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 제도를 건전화하여 공연브로커의 자질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20조** 중국 공연업계협회가 공연브로커 자격인증 업무 조직에 비용을 수취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文化部关于印发《演出经纪人员管理办法》的通知**  文市发〔2012〕48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文化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文化广播电视局，北京市、天津市、上海市、重庆市、西藏自治区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  　　为依法规范演出经纪活动，加强演出经纪人员队伍建设和管理，明确演出经纪活动当事人的权利与义务，保障演出市场健康发展，文化部制定了《演出经纪人员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组织贯彻落实。  　　特此通知。  　　　　　　　　　　　　　　　　　　　　　　　　　　　　　　 文化部 　　　　　　　　　　　　　　　　　　　　　　　　　 2012年12月5日  **演出经纪人员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演出经纪活动，加强演出经纪人员管理，明确演出经纪活动当事人的权利与义务，保障演出市场健康发展，根据《营业性演出管理条例》（以下简称《条例》）及《营业性演出管理条例实施细则》（以下简称《实施细则》），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演出经纪资格证书是专职演出经纪人员的从业资格证明，全国通用。  **第三条** 本办法所称演出经纪人员，包括在演出经纪机构中从事演出组织、制作、营销，演出居间、代理、行纪，演员签约、推广、代理等活动的从业人员；在县级文化主管部门备案的个体演出经纪人。  **第四条** 设立演出经纪机构，应当符合《条例》规定的条件，有3名以上取得演出经纪资格证书的专职演出经纪人员。  个体演出经纪人在县级文化主管部  门备案时，应当出具演出经纪资格证书。  **第五条** 演出经纪人员在演出经纪活动中应当遵守公平、公正、公开、诚信的原则。  **第六条** 文化部指导监督中国演出行业协会组织实施演出经纪人员资格认定工作。各级文化主管部门负责本辖区内演出经纪人员经纪活动的监督管理。    **第二章 演出经纪资格证书**  **第七条** 中国演出行业协会负责演出经纪资格证书的核发与管理。  　　（一）制定演出经纪资格证书考试大纲。考试内容应当包括演出市场政策法规、演出市场基础知识、演出经纪实务以及从业规范、艺术基础理论。  　　（二）每年应当组织2次全国性考试。考试时间、考试地点应当提前2个月向社会公布，考试结束后30日内公布合格名单并核发演出经纪资格证书。  　　（三）统一印制演出经纪资格证书，证书全国统一编号。  **第八条** 凡年满18周岁以上，中专以上文化程度，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含我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人员），可以通过考试取得演出经纪资格证书。  **第九条** 演出经纪资格证书有效期为5年。有效期满应当到原发证单位办理换证手续。逾期未办理的，应当注销演出经纪资格证书。  **第十条** 演出经纪人员从业单位发生变更的，演出经纪人员应当到原发证单位办理变更手续。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变造、出租、出借演出经纪资格证书。  **第三章 从业规范**  **第十二条** 演出经纪人员应当遵守以下规定：  　　（一）根据《条例》、《实施细则》以及相关法规的规定提供演出经纪服务；  　　（二）演出经纪合同中应当注明负责该项业务演出经纪人员的演出经纪资格证书证号；  　　（三）保存经纪业务记录；  　　（四）对所经纪的演出项目进行内容自审，保证演出内容健康合法；  　　（五）按规定参加演出经纪相关继续教育，提高业务素质和职业道德水平；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行为规则。  **第十三条** 演出经纪人员不得有下列行为：  　　（一）在演出经纪机构中从业的人员以个人名义从事演出经纪活动；  　　（二）在两家以上（含两家）演出经纪机构从业；  　　（三）隐瞒与经纪业务有关的重要事项，或者对经纪业务作虚假宣传；  　　（四）为含有《条例》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演出提供经纪服务；  　　（五）法律法规禁止的其他行为。  **第十四条** 演出经纪人员在经纪活动中应当保障演员合法权益，规范演员从业行为，协助演员提高业务素质，督促演员遵守职业道德。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五条** 文化主管部门颁发、换发演出经纪机构营业性演出许可证时，应当核验并登记演出经纪人员的演出经纪资格证书。  **第十六条** 文化主管部门审批营业性演出活动，应当核验负责该项业务演出经纪人员的演出经纪资格证书。  **第十七条** 中国演出行业协会应当加强对演出经纪人员的信用管理，对演出经纪人员违反职业道德和行业规范的行为，应当在行业内按规定处理。演出经纪机构受到行政处罚的，中国演出行业协会应当对负责该项经纪业务的演出经纪人员予以通报批评，情节严重的，中国演出行业协会应当注销其演出经纪资格证书，自注销之日起5年内不得重新申请。  **第十八条** 中国演出行业协会应当依托全国文化市场技术监管与服务平台，建立演出经纪人员档案，记录演出经纪资格证书取得、变更、撤销等信息，为行政审批、综合执法、公众查询提供服务。  **第十九条** 中国演出行业协会应当根据演出经纪业务特点，制定演出经纪人员分类、分级管理细则，加强对演出经纪人员的服务，健全继续教育制度，提高演出经纪人员素质与水平。  **第二十条** 中国演出行业协会组织演出经纪人员资格认定工作收取费用的，应当依法办理相关手续，接受社会监督。  **第二十一条** 本办法自2013年3月1日起施行。 |